

『 구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 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7년 11월 21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7년 11월 21일

라. 상정일자 : 2007년 12월 21일

제130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김 자 원

나. 제안이유

- 「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이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으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준칙이 시달되어
-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서 정한 시장의 시설기준·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시장상인회의 등록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,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「구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」를 제정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시장의 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 내지 제5조)
 - 시장의 구역,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 관리, 편의시설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사항
- 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과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 내지 제13조)
- 농민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19조 내지 제20조)
-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23조 등)
 - 상인회 설립, 상인회 정관, 상인회 등록, 취소 등에 관한 사항
-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 (안 제31조)
-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34조 등)
 - 시설물의 소유권, 위탁관리, 수탁자의 의무 등에 관한사항
-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(안 제40조)

라. 참고사항

-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나 명 철

- 본 제정 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 관리에 관한 근거법인 「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이 2006. 4. 28 법률 제794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6. 12. 31까지 한시법인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으로 변경됨에 따라, 개정법에 의해 중소기업청에서 마련한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
-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을 묶어서 시장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토록 하며 상인회 등을 시장 관리자로 하여 재래시장의 상업기반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

- 중산 서민층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는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로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임.
- 다만, 안 제19조 내지 제22조의 “제5장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·지원”은 2007. 6. 18 제정된 「구미시 농업·농촌 발전 지원 조례」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, 향후 매장을 운영 할때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연구·검토하여 추진한다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